



제 42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증빙서류 거짓 제출 공직후보자 처벌〉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27호)

2025.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동진 · 성일종 · 안상훈 · 김상훈 · 강승규 · 김예지
박준태 · 서일준 · 최수진 · 김성원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5. 6. 23.

3. 회 부 일 : 2025. 6. 24.

※ 의안번호 : 110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일어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공직후보자 재산의 고의적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공직의 신뢰성과 청문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의 검증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문제임.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전제로 인사청문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주요사항을 누락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 벌칙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국회의 청문

절차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따라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신고, 세금납부실적, 범죄경력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세부 내용을 누락시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공직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 첨부되는 증빙서류 중 ① 재산신고사항, ②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③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내용을 누락하여 제출한 공직후보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벌칙) 제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내용을 누락하여 제출한 공직후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5조¹⁾는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할 때 ①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② 병역신고사항, ③ 재

1) 「인사청문회법」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대통령당 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가,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후보자가 이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산신고사항, ④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⑤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빙서류는 공직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법정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법정 기초자료인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대한 적절한 제재 규정이 없어, 거짓 또는 누락 제출된 증빙서류로 인하여 사실과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인사검증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윤리성 등의 검증에 있어 필수적인 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는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내용을 누락하여 제출한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벌칙조항 신설 및 법정형과 관련하여, 벌칙은 기본적으로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유사 범죄의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그 형량은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

록 비례성을 지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²⁾

한편,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인사청문회법」 제19조³⁾에 따라 준용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누락하여 제출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의 범죄구성요건 및 법정형⁴⁾을 감안하여, 공직후보자의 증빙서류 거짓 제출 또는 누락 제출 행위를 가벌성이 인정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균형이 유지된 책임에 상응하는 법정형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증빙서류의 제출주체를 공직후보자로 인식하고 공직후보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임명동의안등의

2) 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7헌바195 결정

3) 「인사청문회법」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구성요건		법정형
불출석 등의 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의로 출석요구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국회 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5년 이하 징역
위증 등의 죄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증빙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를 임명권자(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지명권자(대법원장)로 규정⁵⁾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법상 증빙서류 제출주체와 개정안상 증빙서류 거짓 또는 누락 제출주체가 불일치하여 위반행위의 처벌대상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 보임.⁶⁾

따라서, 벌칙 적용에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빙서류 제출주체와 증빙서류 거짓 또는 누락 제출주체를 일치시키는 등 처벌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은 시행일을 ‘ 공포한 날 ’로 정하고 있는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⁷⁾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적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5) 「인사청문회법」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가,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후보자가 이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6) 사실상 공직후보자가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준비하여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법률상 증빙서류 제출자는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이지 공직후보자가 아님.

7)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017